

조례안예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62호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안정적인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우수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94
----------	-----

발의연월일 : 2023. 5. 26.

발 의 자 : 김경희·김수혜·김현일·남재욱·백승규·서명일
성보빈·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종화·이찬수
이해련·전홍표·최은하·최정훈·한은정
홍용채 의원(18명)

1. 제안이유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안정적인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 과 우수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등)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

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기준을 준수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을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작업기준을 준수할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외부 간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기준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의 등록기준에 따른다.

■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사무실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창원시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다. 출구 및 입구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은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전체 전시시설의 연면적의 합계에서 비전시시설(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가.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로서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나.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4조 관련)

구 분		자동차 종 합 정비업	자동차 소 형 정비업	자동차 전 문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 면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 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 이상
	나. 시설 및 장비	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2. 체인부록(1톤이상) 3.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4.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 - ○ ○	○ - - ○
다. 정비 및 검사기구	1. 제동시험기	○	○	-	-
	2. 전조등시험기	○	○	-	-
	3.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4. 속도계시험기	○	○	-	-
	5.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6. 탄화수소측정기	○	○	○	○
	7. 매연측정기	○	○	○	○
라. 시험기 및 측정기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2. 노즐시험기	-	-	-	○
	3. 압력측정기	○	○	-	○
	4. 회전반경측정기	○	○	○	-
	5. 휠밸런스	○	○	○	-
	6. 토인측정기	○	○	○	-
	7.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8. 엔진종합시험기	-	-	-	○
마. 공작 기계	1. 실린더보링머신	-	-	-	○
	2. 실린더호닝머신	-	-	-	○

	3. 벨브시트그라인더	-	-	-	○
	4. 벨브시트카터	-	-	-	○
	5. 크랭크연마기	-	-	-	○
	바. 인력기준	정비 책임자: 1명	정비 책임자: 1명	정비 책임자: 1명	정비 책임자: 1명

주) 1. ○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날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측정기 및 탄화수소 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트측정기는 이들 3종 기능을 통합한 휠얼라인먼트를 갖춘 경우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8. 자동차정비업자가 LPG자동차의 LPG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 또는 그 밖의 LPG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를 할 경우에는 미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스용기부속품정비업의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 (제4조 관련)

1. 시설기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가.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가.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나. 잔가스 연소장치	나. 잔가스 연소장치
다. 가스누출 감지기	다. 가스누출 감지기
라. 소화기	라. 소화기

2. 작업기준

- 가.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없을 시에는 정비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할 것
- 나.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고 환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 다.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 주위에는 작업에 필요한 것 이외의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을 것
- 라.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 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않을 것
- 마. 가스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에는 용기내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용기내부에 들어 있는 기체상태의 가스는 잔가스연소장치로서 완전히 연소시킨 후 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 낼 것
- 바.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비작업을 실시한 부분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여 누출이 있을 시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

의 누출 여부를 점검할 것

아.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탈거할 경우에는 그 용기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불일치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

■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5조 관련)

구 분		기 준
가. 시설 기준	1.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	4,500㎡ 이상
	2.해체작업장	600㎡ 이상
	3.부품보관창고	600㎡ 이상
나. 장비 기준	1.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	1대 이상
	2.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	1대 이상
	3.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1대 이상
	4.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	압축기 · 파쇄기 · 전단기 · 용해로 중 선택하여 1대 이상
	5.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	
	6.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	
	7.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다. 가스 자동차 폐차시설	1.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잔가스처리(이송)설비, 잔가스연소장치 중 선택하여 1대 이상
	2.용기내부의 잔가스 연소장치	
	3.가스누출 감지기	1대 이상
	4.소화기	1대 이상

주) 1.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하여 가스자동차의 폐차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가스자동차를 폐차하는 작업장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떼어낼 때에는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조심하여 떼어 내어야 한다.

- 마.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에는 내부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설비로 완전히 회수하거나, 잔가스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시킨 후 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 바. 가스용기를 폐기(절단)할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열고 가스누출감지기로 내부의 잔가스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한 후 폐기(절단)하여야 한다.
-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2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에 따른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그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그 시설 및 용기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2. 제4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로서 비가연성·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사용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하면 그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나 정지를 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안전교육) 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